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9권 제3호(통권 제115호, 2018・가을)

조건부가치 추정을 통한 징역형의 금전적 가치에 관한 연구

오정일*

국 | 문 | 요 | 약

본 논문의 목적은 시민들이 징역에 따르는 고통의 가치를 금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역 1년을 가정하고 응답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수용하는 대가를 물어 보았다. 전자를 지불의사금액, 후자를 수용의사금액, 이러한 방식으로 응답자의 지불(수용)의사금액을 측정하는 것을 조건부가치 추정이라고 한다. 또한, 징역등가 벌금액도 측정하였다. 이는 지불(수용)의사금액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 밖에,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징역을 회피하거나 부담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00만 원을 지불하고 교도소에 가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5%, 3억 원을 받고 1년 간 교도소에 간다는 비율은 55.7%이었다. 또한, 모든 응답자가 징역 1년 대신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불의사금액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지불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 수준과 성별은 지불 확률과 무관하였다. 수용의사금액에 있어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용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등가 벌금액의 경우에는 연령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벌금을 부과할 확률이 낮았다. 셋째, 징역 1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기댓값은 약 3,500만 원, 수용의사금액의 기댓값은 2.7억 원으로 측정되었다. 수용의사금액이 지불의사금액의 8배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징역등가 벌금액의 기댓값은 약 5,100만 원으로서 지불의사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넷째, 10대의 지불의사금액의 기댓값은 약 2,700만 원, 20~30대는 약 3,200만 원이며 40대 이상은 4,000만 원을 초과하였다. 수용의사금액의 기댓값은 30대 이하는 약 2억 원, 40대 이상은 3억 원을 상회하였다. 징역등가 벌금액의 기댓값은 10대와 20~30대는 약 6,000만 원, 40대 이상은 약 4,500만 원이었다.

본 논문에 의하면 징역 1월의 금전적 가치는 지불의사금액 및 징역등가 벌금액을 기준으로 약 300~430만 원이다. 이는 월 최저 소득 120만 원의 2.5~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 상 징역 1월은 선택형으로서 벌금 22만 원에 불과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금액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형법 개정 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시민들의 법적 인식을 반영하여 벌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 주제어 : 징역형, 벌금형, 지불의사금액, 수용의사금액, 로지스틱 회귀분석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Ⅰ. 서론

형법은 9종류의 형벌을 규정하는데 형의 경·중은 동조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다(제41조). 즉,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서가 된다. 형의 경·중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종류의 형벌은 서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거나 양자를 병과하는 범죄가 존재한다. 벌금형은 형벌체계 상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자에게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강력하게 작용한다. 또한, 벌금형은 환형 처분을 통하여 자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벌금형이 징역형과 선택적으로 규정된 사실, 벌금형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양자는 이질적인 형벌이지만 호환성이 있다고 하겠다.

징역형의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이 규정된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일한 불법성을 표현한 것은 아니며 벌금형은 징역형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범죄에 대한 대체 수단의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 있다.[1] 그렇더라도 벌금형은 징역형과 비례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개별 범죄의 불법성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 우리 형법 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경우 징역 10년은 벌금 2천만 원, 징역 5년은 벌금 1천5백만 원, 징역 3년은 벌금 1천만 원으로서 양자가 비례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법 제276조 존속감금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2]

법정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입법한 이유와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정 형법이 법정형을

1) 김혜경(2012)은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은 자유형의 경·중에 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형을 대체하면서 자유형을 적용하기에 경미한 불법성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자유형의 중한 정도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 외에도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29조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369조 특수손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양정한 이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이유, 징역형과 벌금형의 관계 등이 법문 상 명확하지 않다.[3]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 형법에서도 발견된다.[4] 그 동안 17차례의 개정을 통해 징역형과 벌금형 간 비례 관계가 분명해진 것은 아니다.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주된 연구 과제는 두 가지이다. 절대적 수준에서 적정한 징역 기간과 벌금액을 파악하고, 징역형과 벌금형 간 이상적인 비례 관계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벌금형이 징역형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징역에 따르는 고통의 가치를 금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한 상황(징역 1년)을 가정하고 응답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수용하는 대가를 물어 보았다. 전자를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후자를 수용의사금액(willingness to accept)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응답자의 지불(수용)의사금액을 측정하는 것을 조건부가치 추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라고 부른다. 지불의사금액과 수용의사금액은 응답자가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최대 지불금액과 최소 수용금액을 밝힌 것이다.

하나의 상황에 대해 지불의사금액과 수용의사금액을 동시에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가 사고로 인해 손가락 하나를 잃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손가락 하나를 잃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당신은 돈을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라고 A에게 묻는다면 이는 손가락 하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는 것이다. 반면, “손가락 하나를 잃는 대가로 당신은 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라고 A에게 질문한다면 이는 수용의사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응답자가 합리적이면 지불의사금액과 수용의사금액은 동일하다. 손가락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해 1억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그것을 잃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의사금액은 지불의사금액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김동건, 2012). 이를 손실을 기피하는 성향이라고 한다.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손실을 이득에 비해 4∼15배

3) 최준혁(2014)은 1953년 제정된 우리 형법은 적어도 형벌제도에 관한 한 일본 형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4) 자유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경우 자유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유사한 특성이 있는 범죄 간 벌금액의 통일성은 없다(이천현, 2007).

더 크게 인식한다(김성준 외, 2012).[5][6]

조건부가치 추정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지불하겠다는 금액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언급된 선호(stated preference)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지불(수용)의사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 지불(수용)의사금액을 묻느냐이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설문 방식이 사용된다. 첫째, 개방형 설문조사는 응답자에게 지불(수용)할 의사가 있는 최대(최소) 금액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다. 둘째, 양분선택형 설문조사는 응답자에게 특정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지불 또는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게 한다. 만약,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복수의 금액을 연속적으로(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제시하면서 응답자의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파악한다면 이는 연속양분선택형 설문조사에 해당한다.[7]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설문(예비적 설문조사)과 연속양분선택형 설문(본 설문조사)을 통해 징역 1년에 대한 지불 및 수용의사금액, 징역등가 벌금액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지불(수용)의사금액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징역등가 벌금액을 측정할 경우에는 제3자적 시각에서 주어진 상황을 판단한다. 징역등가 벌금액은 지불(수용)의사금액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형사제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시민들의 법적 인식 조사, 조건부가치 추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연구방법, 설문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3장에 기술하였다. 4장은 본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징역 1년에 대한 지불(수용)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을 측정한 결과이다. 끝으로 5장에 연구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5) 따라서 지불의사금액은 특정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또는 비효용)의 최솟값을, 수용의사금액은 효용(또는 비효용)의 최댓값을 나타낸다.

6) 이 밖에 징역 1년에 대한 징역등가 벌금액도 측정하였다. 이 용어는 저자가 만든 것이다. 이 경우, 응답자는 판사의 입장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징역 대신 벌금을 부과한다.

7) 이 외에도 단일양분선택형과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조사가 있다.

II. 기존 연구 검토[8)]

본 논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기존 연구는 세 종류로 범주화된다.

첫째, 특정한 형사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특정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대체로 지불의사금액을 통해 편익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이 범주에 속하는 기존 연구로 박경래(2013), 형사정책연구원(2011, 2009)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플리 바게닝) 제도, 주폭 척결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 등에 대한 시민 또는 경찰의 지불의사금액을 개방형 또는 양분선택형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특히, 형사정책연구원(2009)은 다른 연구에 비해 방법론 측면에서 개선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정책연구원(2009)은 단일양분선택과 이중양분선택 모형을 적용하여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였다.

둘째, 시민들의 법적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가 징역의 금전적 가치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그것을 측정한 측면이 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10년부터 “한국청소년의 투명도 연구”라는 이름으로 청소년과 학부모의 정직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2015년의 조사는 청소년 4,820명, 학부모 1,9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항목 중에는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질문이 있다. 징역 1년에 대해 10억 원을 제시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징역에 대한 수용의사금액을 측정하였다는 점이 본 논문과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약 36%, 학부모의 약 12%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2014)은 범죄 사례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징역을 부과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조건부가치 추정에 해당한다. 또한, 응답자가 제3자의 시각에서 형량을 정한다는 점에서는 징역등가 벌금액과 유사하다[9)].

---

8) 필자가 찾아본 바로는 외국의 경우 본 논문과 유사한 주제를 연구한 기존연구가 없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연구를 검토하였다.

9) 예를 들면, 일반사기죄에 대한 설문의 경우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제시되었다. “A(남, 50세)는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하게 되었다. A는 일부러 이 사실을 숨긴 채 지인 B(남, 53세)에게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는 양분선택형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한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지불의사금액의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지방회계정보(임동완 외, 2017),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주덕, 2016), 교통사고의 심리적 비용(유정복 외, 2014), 축제 입장료(정찬영 외, 2014)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연구를 검토하면 양분선택형 설문조사, 로지스틱 회귀분석, 지불의사금액의 평균 및 중간 값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최소 및 최대 금액, 제시 금액의 수, 단일양분선택과 이중양분선택 모형의 차이, 지불의사금액의 평균 및 중간 값의 계산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징역의 금전적 가치를 지불(수용)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을 통해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앞의 두 범주에 속하는 연구를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는 그 목적이 특정한 형사제도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다.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신상 공개 및 전자발찌 제도의 편익을 지불의사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10] 반면, 징역의 금전적 가치를 지불의사금액을 통해 측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형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범죄자가 수감되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끝으로 기존 연구는 지불의사금액으로 편익의 크기를 측정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수용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도 측정하였다. 지불의사금액과 수용의사금액을 동시에 측정할 경우 전자는 금전적 가치의 최소치를, 후자는 최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이 잘 되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3,000만 원을 빌려 잠적했다.”

10) 신상 공개 제도의 편익은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감소한 범죄 수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곱한 것으로 정의된다. 성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시민의 지불의사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표 1〉 기존 연구 요약

	저 자	연 도	주 요 내 용
형사제도	박경래	2013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응답자 500명/개방형 설문조사
	형사정책연구원	2011	• 충북경찰청 주폭 척결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응답자 408명(경찰 208명, 주민 200명)/개방형 설문조사
	형사정책연구원	2009	•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정책(신상공개 및 전자발찌)의 사회적 편익 • 응답자 500명/양분선택형 설문조사
법인식 조사	흥사단	2015	• 청소년 및 학부모 정직지수 조사 • 응답자 6,735명(청소년 4,820명, 학부모 1,915명) • 설문: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간 교도소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형사정책연구원	2014	•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 • 응답자 900명(일반인 598명, 전문가 302명)/개방형 설문조사 • 범죄 사례를 제시하고 적정한 형량을 질문함
조건부 가치추정	임동완 외	2017	• 지방회계정보의 경제적 가치 • 응답자 330명/양분선택형 설문조사
	주덕	2016	•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 응답자 300명/양분선택형 설문조사
	유정복 외	2014	• 교통사고의 심리적 비용 • 응답자 551명/양분선택형 설문조사
	정찬영 외	2014	• 축제 입장료 측정 • 응답자 508명/양분선택형 설문조사

III. 연구 방법 및 사용 자료

1. 연구 방법

지불(수용)의사금액은 응답자가 이해당사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상적 상황에 대해 지불(수용)할 수 있는 금액을 밝힌 것이다. 반면, 징역등가 벌금액은 응답자가 제3자로서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하다고 밝힌 금액이다. 형량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판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제3자적 시각에서 징역의 금전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불(수용)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표 2>와 같은 가상적 상황을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표 2〉 설문조사의 가상적 상황

	가상적 상황
지불의사금액	당신은 죄를 지어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벌금을 내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수용의사금액	당신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감옥에 1년 동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징역등가 벌금액	A는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A에게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표 2>에서 확인되듯이 가상적 상황은 감옥에서 1년을 지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불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의 경우 응답자에게 낮은 금액부터 제시하여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설문이 종료되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아니오”로 대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수용의사금액의 경우에는 높은 금액부터 제시하여 “아니오”의 대답이 나올 때까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니오”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이유는 지불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은 응답자의 “최대” 금액을, 수용의사금액은 “최소” 금액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예”라는 대답은 1로, “아니오”는 0으로 수치화하였다. 예를 들어, 100명에게 1,000만 원을 제시하고 지불 의사를 물은 결과, 70명이 “예”, 30명이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면 평균적인 시민이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징역 1년을 회피할 확률은 0.7($\frac{(1\times 70)+(0\times 30)}{100}$)이다. 또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을 지불할 확률이 각각 0.7, 0.6, 0.3, 0.2, 0.1로 측정된다면 징역 1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1,900($(0.7+0.6+0.3+0.2+0.1)\times 1,000$)만 원이다.

이 밖에,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징역을 회피하거나 부담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물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불하거나 수령하는 금액 즉, 설문조사에서 제시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제시되는 금액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수준 등이 응답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제시되는 금액 외에 응답자의 연령이나 교육 수준이 지불(수용)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불(수용)의사금액을 연령대별, 교육 수준별로 측정해야 한다.[11)]

2. 사용 자료

연속양분선택형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시되는 첫 번째 금액(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몇 개의 금액을 제시할 것인가?”, “순차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설문조사에 제시할 금액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와 우리나라 한국개발연구원의 권고안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비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밝힌 지불(수용)의사금액의 15~85%에 해당하는 금액을 5구간으로 나누어서 본 설문조사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3〉 예비적 설문조사 결과

	지불의사금액	수용의사금액	징역등가 벌금액
평균	3,500	32,302	4,886
최솟값	500	1,000	500
최댓값	12,000	120,000	20,000
하위 15%	500	2,100	1,000
하위 85%	6,500	100,000	10,000
표본 크기	54명	53명	50명

주. 단위는 만 원

예비적 설문조사는 2018년 2월 20~28일에 세 유형(지불의사금액, 수용의사금액, 징역등가 벌금액)별로 각각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12)] <표 3>은 예비적

11) 징역등가 벌금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2) <표 2>의 가상적 상황이 제시되면 응답자는 주관식으로 대답하였다(개방형 설문).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지불(수용)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에 대한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이다. 수용의사금액의 평균은 약 3.2억 원으로서 지불의사금액의 약 9배이다. 또한, 징역등가 벌금액의 평균은 약 4,900만 원인데 이는 지불의사금액의 평균보다 약 1,4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수용의사금액에 비해 지불의사금액이 객관적인 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13] 응답자는 자신이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금액을 결정한다고 해석된다.

〈표 4〉 본 설문조사에 제시된 금액

	지불의사금액	수용의사금액	징역등가 벌금액
금액 1*	1,000	10,000	1,000
금액 2	2,000	20,000	3,000
금액 3	3,000	30,000	5,000
금액 4	4,000	40,000	7,000
금액 5**	5,000	50,000	10,000

주. 단위는 만 원 *: 최소 금액 **: 최대 금액

예비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지불의사금액의 15~85% 범위는 500~6,500만 원이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는 1,000~5,000만 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예비적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빈도(frequency)를 나타낸 금액을 반영한 결과이다. 예비적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0%가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수용의사금액의 경우에는 2,100~100,000만 원이 15~85% 범위에 해당하지만 이상치(outlier)로 인해 85%에 해당하는 금액(100,000만 원)이 과장되었다. 이는 개방형 설문조사의 단점이다. 수용의사금액은 지불의사금액의 4~15배라는 기존 연구를 감안하여 지불의사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본 설문조사에 제시하였다. 끝으로 징역등가 벌금액은 15~85%에 해당하는 1,000~10,000만 원을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원으로 나누어서 본 설문조사에 사용하였다.

13) 미국 NOAA도 수용의사금액보다는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박현 외, 2004).

〈표 5〉 본 설문조사의 연령대별 표본 구성

	지불의사금액	수용의사금액	징역등가 벌금액
10대	51명	51명	52명
20~30대	58명	60명	55명
40~50대	71명	70명	77명
60대 이상	42명	40명	40명
합 계	222명	221명	224명

본 설문조사에서는 한 명의 응답자에게 지불(수용)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을 묻지 않고 한 종류의 금액만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의 응답자에게 하나의 가상적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세 개의 응답 집단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14] 세 응답 집단의 구성을 통일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표본 구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0대 이하의 비율은 19.5%, 20～30대는 26.88%, 40～50대는 33.83%, 60대 이상은 19.78%이다.[15] 이 비율을 적용하여 표본을 구성한 결과가 <표 5>이다. 10대는 경상북도 소재 중·고등학교 중 하나를 정해서 재학생을, 20대는 경북대학교 재학생을, 30대 이상은 경상북도와 대구시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8년 3월 19～29일에 대면 설문의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14) 만약, 지불의사금액의 응답 집단이 수용의사금액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다면 이로 인해 지불의사금액이 과장 또는 축소될 수 있다.

15) KOSIS에서 인용

IV. 연구 결과

〈표 6〉 본 설문조사 결과

	지불의사금액		수용의사금액		징역등가 벌금액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금액 1	222 (100%)	0 (0%)	36 (16.29%)	185 (83.71%)	224 (100%)	0 (0%)
금액 2	186 (83.78%)	36 (16.22%)	74 (33.48%)	147 (66.52%)	187 (83.48%)	37 (16.52%)
금액 3	160 (72.07%)	62 (27.93%)	123 (55.66%)	98 (44.34%)	95 (42.41%)	129 (57.59%)
금액 4	128 (57.66%)	94 (42.34%)	143 (64.71%)	78 (35.29%)	37 (16.52%)	187 (83.48%)
금액 5	90 (40.54%)	132 (59.46%)	221 (100%)	0 (0%)	22 (9.82%)	202 (90.18%)

주. 금액 1~금액 5의 값은 설문조사의 유형에 따라 상이함. 지불의사금액: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수용의사금액: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 징역등가 벌금액: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원.

<표 6>은 지불(수용)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에 대한 응답자의 대답을 요약한 것이다. 세 유형별로 최대 5개의 금액을 연속적으로 물어보았다. 지불의사금액의 경우, 높은 금액이 제시됨에 따라 “예”라는 대답이 감소하였다. 5,000만 원을 지불하고 교도소에 가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5%에 불과하다. 수용의사금액의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수용 확률이 증가하였다. 3억 원을 받고 1년 간 교도소에 간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5.7%이고, 모든 응답자가 5억 원을 받고 1년 간 교도소에 간다고 대답하였다. 징역등가 벌금액에 있어서는 모든 응답자가 징역 1년 대신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으며 1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약 9.8%이다.

〈표 7〉 지불(수용)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지불의사금액	금액 2 (2,000만 원)	금액 3 (3,000만 원)	금액 4 (4,000만 원)	금액 5 (5,000만 원)
성별	0.009(0.393)	0.046(0.324)	0.141(0.308)	-0.057(0.291)
연령대	0.830(0.246)***	0.736(0.185)***	0.996(0.176)***	0.508(0.147)***
교육수준	-0.267(0.330)	-0.227(0.265)	-0.492(0.256)*	-0.044(0.227)
표본크기	222	222	222	222
P값	0.001	0.000	0.000	0.000
결정계수(R^2)	0.08	0.08	0.13	0.05
수용의사금액	**금액 1 (1억 원)**	**금액 2 (2억 원)**	**금액 3 (3억 원)**	**금액 4 (4억 원)**
성별	-0.419(0.378)	-0.632(0.300)**	-0.525(0.315)*	-0.104(0.349)
연령대	0.487(0.186)***	0.533(0.154)***	1.059(0.176)***	1.535(0.231)***
교육수준	-0.780(0.321)**	-0.180(0.233)	-0.565(0.254)**	-0.725(0.295)**
표본크기	221	221	221	221
P값	0.005	0.000	0.000	0.000
결정계수(R^2)	0.07	0.06	0.17	0.25
징역등가 벌금액	**금액 2 (3,000만 원)**	**금액 3 (5,000만 원)**	**금액 4 (7,000만 원)**	**금액 5 (1억 원)**
성별	-0.488(0.393)	-0.234(0.284)	-0.059(0.393)	-0.069(0.492)
연령대	-0.053(0.190)	-0.482(0.157)***	-1.174(0.297)***	-1.497(0.456)***
교육수준	0.613(0.355)*	0.270(0.256)	0.766(0.371)**	0.722(0.497)
표본크기	224	224	224	224
P값	0.140	0.014	0.000	0.000
결정계수(R^2)	0.03	0.03	0.11	0.15

주. 상수항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10%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함 **: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함 ***: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함

<표 7>은 특정 금액을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이 금액을 지불(수용)할 것인지, 부과할 것인지를 설문한 결과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것이다.[16]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표 6>에 제시된 "예" 또는 "아니오"라는 응답이고 설명변수는 설문항목에 포함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은 모든 응답자가 "예"라고 대답한 금액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없

16) 응답자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으나 모든 모형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추정 결과를 생략하였다.

다는 것이다. <표 6>을 보면 지불의사금액의 경우 응답자 222명 모두가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수용의사금액에 있어서는 221명 전원이 5억 원을 받겠다고, 224명의 응답자는 징역 1년 대신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대답하였다.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설명력은 5~13%이다. 제시된 금액이 4,000만 원일 때 설명력이 가장 높으며 5,000만 원을 제시한 모형의 설명력은 5%에 불과하다. 모든 금액에 있어서 연령대의 계수의 부호는 정(+)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지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육 수준은 지불 확률과 무관하며(4,000만 원 제외) 응답자의 성별도 지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용의사금액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불의사금액과 상이하다. 모형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특히, 제시된 금액이 4억 원과 5억 원인 경우 결정계수의 값은 각각 17%와 25%이다. 교육수준의 계수의 부호는 3개 모형에서 부(-)로 나타났다. 징역등가 벌금액의 경우 연령대와 교육수준의 계수의 부호는 대체로 지불(수용)의사금액과 반대로 나타났다. 지불(수용)의사금액과 달리 징역등가 벌금액은 타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응답자의 연령·교육 수준과 지불(수용) 및 부과 가능성

	지불 가능성	수용 가능성	부과 가능성*
연령	+	+	-
교육 수준	-	-	+

주. *: 징역등가 벌금액을 부과할 가능성을 의미함

<표 7>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을 보면 연령이 높은 응답자와 교육 수준이 높은 응답자의 행태는 상반된다. 양자의 행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연령이 높은 응답자는 돈을 지불(수령)하고 징역을 회피(부담)하는 경향성이 강하지만 이를 타인에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둘째, 교육 수준이 높은 응답자는 돈을 지불(수령)하고 징역을 회피(부담)하는 경향성이 약하나 이를 타인에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17]

17)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지불(수용)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

〈표 9〉 지불(수용)의사금액 및 징역등가 벌금액의 기댓값

지불의사금액	10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금액 1 (1,000만 원)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액 2 (2,000만 원)	0.706	0.759	0.944	0.929	0.838
금액 3 (3,000만 원)	0.510	0.638	0.887	0.810	0.721
금액 4 (4,000만 원)	0.294	0.431	0.789	0.762	0.577
금액 5 (5,000만 원)	0.196	0.379	0.507	0.524	0.405
기댓값	2,706*만원	3,207만원	4,127만원	4,025만원	3,541만원
표본 크기	51	58	71	42	222
수용의사금액	**10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금액 1 (1억 원)	0.118	0.100	0.200	0.250	0.163
금액 2 (2억 원)	0.196	0.267	0.386	0.525	0.335
금액 3 (3억 원)	0.314	0.400	0.671	0.900	0.557
금액 4 (4억 원)	0.353	0.433	0.857	0.975	0.647
금액 5 (5억 원)	1.000	1.000	1.000	1.000	1.000
기댓값	1.98**억원	2.20억원	3.11억원	3.65억원	2.70억원
표본 크기	51	60	70	40	221
징역등가 벌금액	**10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금액 1 (1,000만 원)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액 2 (3,000만 원)	0.788	0.855	0.844	0.850	0.835
금액 3 (5,000만 원)	0.577	0.527	0.260	0.400	0.424
금액 4 (7,000만 원)	0.288	0.309	0.026	0.075	0.165
금액 5 (1억 원)	0.192	0.200	0.013	0.000	0.098
기댓값	5,882***만원	5,982만원	4,299만원	4,650만원	5,142만원
표본 크기	52	55	77	40	224

주. *: $(1+0.706+0.51+0.294+0.196)\times 1,000$
**: $(0.118+0.196+0.314+0.353+1)\times 1$
***: $(1+0.788+0.577+0.288)\times 2,000+0.192\times 3,000$

앞의 <표 7>에서 응답자의 연령이 지불(수용)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장에서는 응답자의 연령대별 지불(수용)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의 기댓값을 측정하였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전체 표본으로부터 측정한 기댓값이지만 연령대별로 기댓값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전체 표본으로부터 측정한 기댓값을 보면 징역 1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약

3,500만 원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00만 원에 해당한다. 반면, 수용의사금액은 2.7억 원으로 측정되었다. 수용의사금액은 지불의사금액의 약 7.7배이다. 징역등가 벌금액은 약 5,100만 원으로서 지불의사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불의사금액의 크기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10대의 지불의사금액은 약 2,700만 원, 20～30대는 약 3,200만 원이며 40대 이상은 4,000만 원을 초과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징역 1년을 회피하는 대가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겠다. 수용의사금액은 30대를 기준으로 크게 달라진다. 30대 이하는 약 2억 원인데 비해 40대 이상은 3억 원을 상회하였다. 징역등가 벌금액의 연령대별 크기는 지불 및 수용의사금액과 다르다. 10대와 20～30대는 약 6,000만 원, 40대 이상은 약 4,500만 원이었다.

V. 결론

본 논문에 의하면 징역 1년의 금전적 가치는 지불의사금액을 기준으로 약 3,500만 원, 징역등가 벌금액으로 측정하면 약 5,1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295만 원과 429만 원이다. 즉, 징역 1월의 금전적 가치는 약 300～43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00원, 일 8시간/주 5일/월 4주의 노동을 가정하면 월 최저 소득은 약 120만 원이다. 따라서 징역 1월의 금전적 가치는 월 최저 소득의 약 2.5~3.6배이다. 여기에는 수감 생활에 따르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로 환산되는가? 우리 형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재판실무 상 징역의 가치가 얼마로 책정되는지를 알 수 있다. 김성균 외(2018)에 의하면 2018년 개정된 형법 상 징역 1월은 선택형으로서 벌금 22만 원에 해당한다. 우리 형법 상 징역 1월의 금전적 가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금액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법정형이 시민들의 법적 인식을 전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벌금형 구조가 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오

래 전에 제기되었다. 형법 개정 시,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 시민들의 법적 인식을 반영하여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의 구성에 있어서 지역적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에 사용된 표본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추출되었다. 모든 시민들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되므로 전국적으로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 다만, 법정형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기존 연구가 없으므로 일부 지역에서 추출한 표본을 사용한 연구 결과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징역의 금전적 가치를 측정한 단점이 있다. 징역을 경험한 전과자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찰, 검찰 공무원을 설문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비교하면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징역 1년의 금전적 가치를 측정하였으나 3년 또는 5년에 대한 지불(수용)의사금액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징역 3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징역 1년의 세 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면 징역 3년에 해당하는 금액은 1년의 세 배에 못 미치거나 초과할 수 있다.[18] 징역 1년 외에 3년, 5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면 보다 현실적인 벌금형 구조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18) 징역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통이 체증적으로 증가한다면 징역 3년에 대한 지불(수용)의사금액은 1년의 세 배를 초과할 것이나, 고통이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면 세 배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김동건. (2012). 비용·편익분석. 서울: ㈜ 박영사.

김석수. (2006). 철학, 고통 그리고 치료. 「철학연구」. 100: 179-201.

김성균·이문호·오정일. (2018). 벌금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제정 형법과 현행 형법에 대한 통계적 분석. 「법경제학연구」 심사 중.

김성준·오정일. (2012).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김혜경. (2012). 법정형으로서 합리적 벌금형을 위한 필요조건. 「형사법연구」. 24(2): 102-137.

박경래. (2013).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편인분석 연구. 「한국경찰연구」. 12(2): 79-114.

박경래·강우예·고학수·이종인·이종한·최성락·김대근. (2009).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596.

박경래·김용호·최성락·김수동·성우제·임혜준. (2011).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Ⅲ).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3-634.

박성훈·김한균·김영규·박철현.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70.

박현·유경준·곽승준. (2004).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법률소비자연맹. (2018). 제55회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법률연맹, 청년대학생 3천6백56명 법의식 조사결과. 1-19.

오정일. (2012).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1): 33-57.

오정일. (2015). 조건부가치추정을 통한 병역제도 설계: 급여와 복무 기간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3): 61-79.

오정일·최우석·이문호. (2016). 포즈너 효율성으로 조망한 대법원 판례. 「아주법학」. 10(3): 260-283.

유정복·이성준. (2014). CVM을 이용한 교통사고의 심리적 비용 산정. 「교통연

구」. 21(2): 41-55.

이천현. (2007). 벌금형의 규정방식에 관한 고찰.「형사정책연구」. 18(3): 467-490.

임동완·윤성일·문광민. (2017). 지방회계정보의 경제적 가치 추정: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1(3): 93-119.

정기호. (2011). 한국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SMART)의 사회적 가치 평가: 비사용 가치를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 10(2): 55-75.

정찬영. 이훈. (2014). 축제의 경제적 지속성을 위한 축제 입장료 지불 가치 추정: 가상적 가치추정방법(CVM)을 이용하여. 「관광연구논총」. 26(2): 153-174.

주덕. (2016). 마을 만들기 사업 가치평가의 결정요인 추정: 지역사회자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3): 325-343.

최준혁. (2014). 벌금형과 보호관찰의 쟁점: 벌금형의 합리적 산정가능성 –형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6(3): 9-44.

한국개발연구원. (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2015). 2015년 대한민국 청소년 및 학부모 정직지수 조사 결과보고서. 1-83.

부록. 지불의사금액의 측정을 위한 설문

본문에 제시한 지불(수용)의사금액과 징역등가 벌금액은 아래와 같은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다. 설문지에 적시된 5개 금액에 대해 응답자 1, 응답자 2, 응답자 3의 대답이 A.1이면 데이터는 A.2가 된다(여타 설명 변수는 제외).

형벌의 금전적 가치에 관한 인식 조사	지불의사금액 (징역 1년)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자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김도현. 010-6455-0162. stats0913@knu.ac.kr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성 □ 여성

❍ **귀하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만 ( )세

❍ **당신의 학력은 어떻습니까?**

□ 고졸 이하 □ 대학 재학 혹은 졸업 □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

❍ **당신의 현재 월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 1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 400만원 초과

☞ **당신은 다음의 가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어서 **1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벌금을 내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Q. 당신은 최대 얼마까지 벌금을 낼 의사가 있습니까?

※ ①번부터 응답하시고 답변의 안내에 따라 설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1,000만 원]**이면 적당하다.
□ 그렇다(②번으로) □ 아니다(설문종료)

② **[2,000만 원]**이면 적당하다.
□ 그렇다(③번으로) □ 아니다(설문종료)

③ **[3,000만 원]**이면 적당하다.
□ 그렇다(④번으로) □ 아니다(설문종료)

④ **[4,000만 원]**이면 적당하다.
□ 그렇다(⑤번으로) □ 아니다(설문종료)

⑤ **[5,000만 원]**이면 적당하다.
□ 그렇다(설문종료) □ 아니다(설문종료)

A. 1 설문 결과

제시 금액	응답자 1	응답자 2	응답자 3
1,000만 원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2,000만 원	아니오	아니오	예
3,000만 원	예	아니오	-
4,000만 원	-	예	-
5,000만 원	-	-	-

A. 2 데이터

종속변수	제시 금액 (설명변수)	
0	1,000	응 답 자 1
0	2,000	
1	3,000	
1	4,000	
1	5,000	
0	1,000	응 답 자 2
0	2,000	
0	3,000	
1	4,000	
1	5,000	
0	1,000	응 답 자 3
1	2,000	
1	3,000	
1	4,000	
1	5,000	

Estimating the Money Value of Imprisonment; an Application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Oh, Jeung-il*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much Korean people value the sufferings from imprisonment in terms of money. For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ask citizens how much they will pay(receive) money to escape(accept) the one-year imprisonment. Using the data from survey, I estimate the expected value of "willingness to pay(WTP)" and "willingness to accept(WTA)". Also, citizens reveal how much they will impose fine instead of one-year imprisonment on the guilty. This amount is named "imprisonment equivalent fine(IEF)".

The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40.5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swer that they will pay 50 million won to escape the one-year imprisonment. About 56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quire 300 million won to be jailed. Also, all respondents would impose 10 million won as the fine on the guilty instead of one-year imprisonment. Second,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show that older people are likely to pay more money to escape the imprisonment. But, either education level or gender is not related with the amount of WTP. In case of the WTA, the highly educated-male respondents are less likely to accept the imprisonment. It is also found that the highly educated old respondents are less likely to impose the fine. Third, the expected value of WTP and WTA for one-year imprisonment is 35 million won and 270 million won, respectively. On average IEF is 51 million won, which is slightly larger than WTP.

According to this study, money value of the sufferings from one-year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mprisonment is 30～43 million won on the basis of WTP and IEF. This amount is 2.5～3.6 times larger than the minimum monthly income. Nevertheless, the average amount of fine for one-month imprisonment is only 220 thousand won in Korean criminal code. Considering inflation rate, economic growth, and citizens' legal attitude, the amount of fine should be raised in near future.

❖ Key words: Imprisonment, Monetary Penalty, Willingness to Pay, Willingness to Accep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투고일 : 8월 17일 / 심사일 : 9월 14일 / 게재확정일 : 9월 14일